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문화거리 등 지역문화거점 활성화 및 지원〉

■ 김기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355호)

2026.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지역문화의 정의에 대중문화예술 포함(안 제2조제1호)	2
2. 문화거리 등 지역문화거점 활성화 및 지원(안 제13조의6 신설)	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기웅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6. 4. 15.
3. 회 부 일 : 2026. 4.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문화’를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으로 정의하는 등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다양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문화의 정의가 전통적인 문화유산 중심으로 해석되어 현대적인 대중문화예술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문화거리는 지역경제의 핵심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부족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역문화의 정의에 대중문화예술을 포함하고, 문화거리 등 문화거점에 재정지원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명분을 확보하고 자발적으로 조성된 문화거점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6 신설 등).

III. 검토의견

1. 지역문화의 정의에 대중문화예술 포함(안 제2조제1호)

개정안은 지역문화의 정의에 대중문화예술을 포함하는 내용임.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u>생활문화</u> ,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1. ----- ----- ----- ----- <u>생활문화, 대중문화예술</u> ----- -----.
2. ~ 8. (생략)	2. ~ 8. (현행과 같음)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현행법 제2조제1호는 지역문화를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지역문화의 정의가 전통적인 문화유산 중심으로 해석되어 현대적인 대중문화예술을

포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예를 들어 최근 대구의 방탄소년단 멤버 관련 벽화가 조성된 곳들은 국내외 팬들이 찾는 명소가 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 부족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지역문화의 정의에 대중문화예술을 포함하여 대중적 수요가 높은 문화예술 분야를 포괄하는 지역문화 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서비스 향유기회를 높이며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그런데, 현행법령 중 ‘대중문화예술’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규정한 법령은 없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대중문화예술산업’에 대하여 정의¹⁾하고 있으며, 대중문화예술산업은 현행법에 따른 지역문화

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문화예술산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방송영상물·영화·비디오물·공연물·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등(이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이라 한다)을 제작하거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알선·기획·관리 등을 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대중문화예술용역”이란 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 연기·무용·연주·가창·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말한다.
3. “대중문화예술인”이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맺은 사람을 말한다.
4.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이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이 1회 이상의 도급에 따라 제작되는 경우에는 상위 수급인(도급인을 포함한다)의 영업을 포함한다.
5.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란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한다.
7.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하여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의 정의에 포함되는 문화산업의 한 분야로 규율²⁾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에 따른 ‘지역문화’의 정의에 의해서도 개정안이 언급하는 ‘대중문화예술’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측면을 감안하여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장르별로 규정된 ‘문화예술’³⁾에 ‘대중문화예술’도 포함

-
8. “대중문화예술사업자”란 대중문화예술제작업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란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과 관련된 기획, 촬영, 음향, 미술 등 업무에 기술적 또는 보조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 가.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 나.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 다.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 마.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 관련된 산업
 - 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 아. 대중문화예술산업
 - 자.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 차.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다만,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
 -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3)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되어 있어, 추가 규정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문화거리 등 지역문화거점 활성화 및 지원 (안제13조의6 신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이 조성한 문화거리 등을 지역문화 거점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제1항 및 제4항),

문화거점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체험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제2항),

문화거점과 관련된 예술인 및 민간단체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임(제3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의6(문화거점의 활성화 및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문화거리(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이 활성화되거나 문화적 특성을 보존하는 지역을 말한다) 등이 지역문화와의 관계에서 중심이 되는 지역을 지역문화 거점(이하 “문화거점”이라 한다)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거점과 관련된 민간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거점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객에게 문화거점과 연계한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등 관광체험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거점과 관련된 예술인 및 민간단체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거점의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활성화방안의 마련 및 관광체험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은 지역문화 진흥을 통한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문화도시와 문화지구를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⁴⁾⁵⁾

4)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문화도시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문화적·역사적 정체성, 창조성, 예술성 등 문화도시로서의 기초여건을 토대로 시·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도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문화지구의 지정·관리) ①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개정안은 ‘도시’와 ‘지구’ 보다는 공간적 범위가 작은 ‘거리’를 중심으로 문화예술 활동이 활성화되거나 문화적 특성이 있어 민간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문화거리’를 지역의 문화거점으로 활성화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이는 현행법의 ‘문화도시’와 ‘문화지구’ 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문화적 특성이 있는 거리와 같은 공간을 문화예술과 다양한 문화산업이 연계될 수 있는 지역의 문화거점으로 만들어,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을 증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골동품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2. 특성화된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개최되는 지역
3. 그 밖에 유형·무형의 문화자원이나 문화적 특성 보존을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대도시 시장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문화지구의 유지·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그 밖에 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문화지구관리계획에 따라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5) 2020년부터 지정이 시작된 문화도시는 2026년까지 3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되었으며, 2026년 기준 문화 지구는 7개(서울 종로구 인사동, 서울 종로구 대학로, 서울 서초구 문화음악지구, 인천 중구 개항장, 경기도 파주시 헤이리, 제주도 저지 문화예술인 마을, 청주 원도심 문화지구)가 지정되어 있음.

또한, 문화거점이 명소화될 경우 이와 연계된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문화거점과 연계된 문화관광체험프로그램이 개발·보급될 경우 문화거점이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거점과 관련된 예술인과 민간단체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건강한 예술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거점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건강한 예술 생태계 조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입법 효과에는 공감하나,

문화거점의 중심이 되는 문화거리 지원은 국가의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문화거점에 대한 재정 지원은 보조금 관련 법령⁶⁾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제4조제1항 단서 관련)

36. 문화의 거리 조성

또한, 「지역문화진흥법」에는 개정안에 따른 ‘문화거점’과 유사한 ‘문화도시’와 ‘문화지구’ 제도가 있어 개정안과 중복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함.

따라서, 개정안에 대하여는 입법취지와 함께 보조금 관련 법령 및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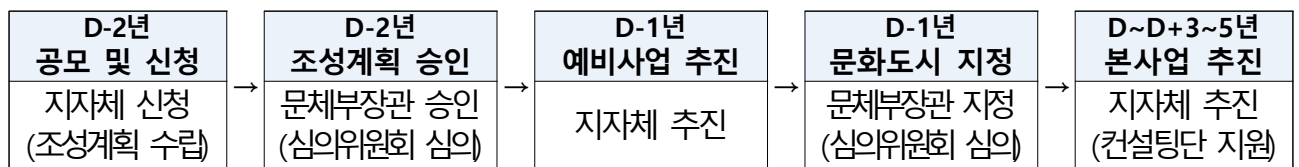
참고

문화도시 및 문화지구 현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도시 개요

- (개념) 문화예술·산업·관광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 도시(제2조)
- (추진근거) 「지역문화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 (지정절차) 지자체 공모 신청을 받아 문체부 장관이 조성계획을 승인하면 1년간 예비사업을 추진한 뒤 문체부 장관이 최종 지정



- (추진경과) '19~'22년 동안 매년 문화도시(1~4차, 총 24곳)를 지정해 개별 지역 중심 도시계획을 지원(5년간 150억원/국비 75억원)해 왔으며,
- '24년부터는 권역별로 대한민국 문화도시(총 13곳)를 지정해 지역 간 연계·협력을 강조함(3년간 200억원/국비 100억원)

구분	문화도시(1~4차)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현황	총 24곳 지정 · (1차/ '20-'24년) 서귀포시, 청주시, 포항시, 영도구, 부천시, 원주시, 천안시 · (2차/ '21-'25년) 춘천시, 김해시, 부평구, 완주군, 강릉시 · (3차/ '22-'26년) 공주시, 목포시, 밀양시, 수원시, 영등포구, 익산시 · (4차/ '23-'27년) 고창군, 달성군, 영월군, 울산시, 의정부시, 칠곡군	총 13곳 지정('25-27년) · (광역시권) 대구 수성구, 부산 수영구 · (경기권) 안성시 · (충청권) 세종특별자치시,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 (강원권) 속초시 · (경상권) 경북 안동시, 경남 진주시, 통영시 · (전라권) 전북 전주시, 전남 순천시, 진도군
지원 방식	개별 지자체 도시계획 지원	전국 문화균형발전 선도 위한 권역별 지원

□ 문화지구 개요

- **(정의)**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 보존 위해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
- **(지정근거)**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문화지구의 지정·관리)

제18조(문화지구의 지정·관리) ①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지정대상)**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골동품점 등 영업시설 밀집 또는 계획적 조성 지역 ▲특성화된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 ▲그 밖에 유·무형 등 문화자원의 보존이 필요해 대도시 시장 등이 인정한 지역
- **(지정절차)** 문화지구관리계획 작성(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 → 시·도지사 승인 → 조례 제정(지정) → 문체부 통보

□ 지정현황 : 전국 7개 지역(서울3, 인천1, 경기1, 충북 1, 제주1)

명칭	지정일시	지정사유	면적
인사동	2002.4.24	인사동의 문화시설 및 문화업종 등의 보존·육성을 통해 역사 문화자원의 관리·보호와 문화환경의 계획적 조성	175,743m ²
대학로	2004.5.8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연문화 산실, 지역 내 밀집한 (소)공연장의 보호 및 육성	446,569m ²
헤이리	2009.2.6	지구내 문화시설 및 문화업종 등의 보존·육성을 통해 문화자원의 관리·보호와 문화환경의 계획적 조성	505,891m ²
인천 개항장	2010.2.1	인천의 역사성과 장소성 대표, 독특한 다국적 도시경관과 근대건축물의 자산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지원, 환황해권의 대표적인 국제 개항문화 체험도시로 발전 도모	537,114m ²
제주 저지문화 예술인 마을	2010.3.8	저지예술인마을의 유지·보존과 문화환경 조성을 통한 문화 예술 거점 및 활성화를 통한 지역특화 발전 도모	325,100m ²
서초음악 문화지구	2018.5.31	예술의전당 일대 클래식음악 관련 문화시설과 문화업종 육성, 특성화된 문화활동 활성화로 지역 문화적 특성 보존 및 생활문화 활성화	410,109m ²
청주 원도심 문화지구	2025.7.18	원도심 지역에 밀집된 지역문화자원 등을 보호·육성하고, 문화예술인과 지역주민 주도의 문화활동 지원 및 시스템 구축 도모	342,293m ²